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1. / (총 1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우 람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한 상 균		044-202-3232
특별관리전담팀	담 당 자	박 소 연		044-202-3238
중앙방역대책본부	팀 장	김 금 찬	전 화	043-719-9210
검역관리팀	담 당 자	손 태 종		043-719-9207
해 양수산부	과 장	임 영 훈		044-200-5770
항만운영과	담 당 자	소 현 수		044-200-5773
법무부	과 장	구 본 준		02-2110-4039
출입국심사과	담 당 자	배 덕 환		02-2110-404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3155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조 현 숙		044-202-38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두 달간 방역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 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 방역대책본부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기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설치율에 편차가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하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장애인보호시설이 문을 닫거나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게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당부하였다.

1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였다.











-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수도권의 학원·PC방은 7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7월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적용시설 현황>

구분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콜라텍			
기존 8종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20.6.10.~)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20.0.10.)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함의 학		학교교과교습학원 (300인 이상) , 평생직업학원 (전체)			
	학원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 *사울 인첫 경기 │ /'○○ ○ 4.5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20.6.15.∼)	PC방	PC방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추가 4종		유통물류센터			
('20.6.23.∼)	교육시설	대형학원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본 사업 개시(6.10.) 이후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5,587개소와 임의시설 1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전자 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7,343건이다.
 -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 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2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의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 □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 *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

구분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확진자 현황		
2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3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 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 작업 시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손 소독제 상시 비치 및 이용, 2m 이상 거리 두기 실천 등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 방안 시행을 준비하여,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 계획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의 감염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우선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①**일반 식당, **②**단체(구내) 식당, **③**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한다.

<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

구분	감염특성	이용자	책임자・종사자
일반 식당	밀폐·밀접한 환경, 장시간 이용 등 감염 위험 특성	∘ 술잔, 식기 등 개인별로 사용하기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 등 제공하기 ○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단체 (구내) 식당	집단 다수 이용 등 감염 위험 특성	∘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기 ∘ 가능한 갈짓자(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기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 운영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방향 배치
뷔페	음식 공동 이용, 다중 행사 등 감염 위험 특성	 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식사 전·후 대화 시,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착용 	 아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자제, 시간예약제 등 운영 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등 비치(필요시 비닐장갑)











- 일반식당은 다시 ①운영 형태, ②규모(면적), ③음식 제공 형태, ④주류 판매, ⑤환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공하여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 예) 지하에 있는 찌개집: (운영형태) 홀 + (제공형태) 공동음식 + (환기) 불가능

<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 >

구분		핵심수칙			
(1)	홀 (Hall)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실시			
운영 형태	룸 (Room)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100m ²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 예약 자제하기			
2	이상	◦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 외치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규모	100m ²	│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미만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실시			
3	공동음식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음식	제공	◦입구,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제공	개별음식	◦음식 또는 음료 등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형태	제공일식 등	∘이용 인원 제한 및 시간 예약제 실시 등			
4	주류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주류	판매	◦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 외치기, 큰 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판매	주류	◦분산이용,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식사 시차제 운영			
여부	미판매	◦입구,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필요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5	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등 주기적 소독			
환기	불가능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가능	환기	• 자연 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여부	가능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앞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3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753개소, ▲대중교통
 3,84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8,37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시설 소독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7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학원 7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시설 소독관리 미흡 등 2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남에서는 8개 시·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6.30~)에 따라 103개소를 점검·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67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7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3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1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2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6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30)는 실외흡연, 병원치료, 택배발송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0개소 2,58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1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30일) 입소 214명, 퇴소 173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7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위험 국가 입국자 총 196명(파키스탄 92명, 방글라데시 10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격리장소 방문(139명)과 현장점검(112명), 매일 전수 모니터링(1일 3회)을 실시하였으며, 증상 발현자나 무단이탈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 붙임 > 1. 음식점 지침 개정안
 - 2.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점검표
 - 3.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음식점 지침 개정안

①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일반식당

- ㅇ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하지 않기
-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침방울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ㅇ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ㅇ 한 접시에 담긴 음식 나눠 먹지 않기

③ 구내식당

-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예: 1조 11:30~12:00, 2조 12:00~12:30, 3조 12:30~13:00)
-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ㅇ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일반식당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ㅇ 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 실시하기
- 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 식사하는 경우 외(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로 배치하고, 테이블 간에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ㅇ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 이용 활성화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음식은 되도록 개인별 용기에 음식(반찬, 국 포함)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 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 특히 이용자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업소 내 음악 소리 등 소음 줄이기
-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 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 ㅇ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 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을 하고 개선 노력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하고, 전자출입명부 또는 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작성하도록 관리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ㅇ 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 실시하기
- ㅇ 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음식을 가지러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및 감독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로 배치하고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두고 앉도록 안내하기
- ㅇ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하고,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 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③ 구내식당

-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예: 1조 11:30~12:00, 2조 12:00~12:30, 3조 12:30~13:00)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문 게시 및 주기적으로 방송으로 안내하기
-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ㅇ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도록 안내하기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안내하기
-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 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붙임2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 점검표

		점검일자:	년	월 일	
		시설명:			
		방역관리자 :			
① 운영형태별 점검 항목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Lace	대로 집단 8국		준수	미준수	
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ţ			
(Hall)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룸 (Doom)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 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두기(에어컨 사용 1회 이상 환기하기)			
(Room)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② 규모별 점검 항목			준수여부 (ਰ	배당에 V표시)	
Δ TIE			준수	미준수	
100m ² 이상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 예약 7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수밀집의 경우 방역수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치기, 큰소리로 말	-칙 철저 준수 안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110, 112 11			
100m ²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미만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이용 안내하기				
[3] 음식 [③ 음식 제공 형태별 점검 항목		준수	미준수	
7501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접시, 집게, 코	자 등 제공	<u> </u>		
공동음식 제공	공용 집게 등 사용 전·후 손소독이 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하기(필요시 비닐	능하도록			
개별음식	음식 또는 음료 등을 나눠먹지 않도록 '	안내하기			
제공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실시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④ 주류 판매 여부별 점검 항목			<u> </u>	미준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주류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차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안내			
판매	테이블당 손소독제 비치 또는 메뉴제공 시 손소독제	등 함께 제공			
주류	분산 이용,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식사 시	· 사제 운영			
미판매	공용 집게 등 사용 전·후 손소독이 가	능하도록			
미번때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하기(필요시 비닐	실장갑 함께 비치)			
⑤ 환기 가능 여부별 점검 항목		준수여부 (ਰ	해당에 V표시)		
			준수	미준수	
 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긴격 유지, 영업 전후 등				
불가능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테이블당 손소독제 비치 또는 메뉴제공 시 손소독제				
환기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				
가능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성	상 환기하기			
※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